제5기 제18회 수암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시 및 장소	2022년 3월 11일 운영위원회 단체대화방 (캡쳐-차민희)
참석자	학부모운영위원(이은심, 박미정, 한명희) 교원운영위원(차민희, 권희은)

의사일정

1) 유아의 동거가족 확진 시 등원중지 및 등원 가능 기준
   - 완치 유아 등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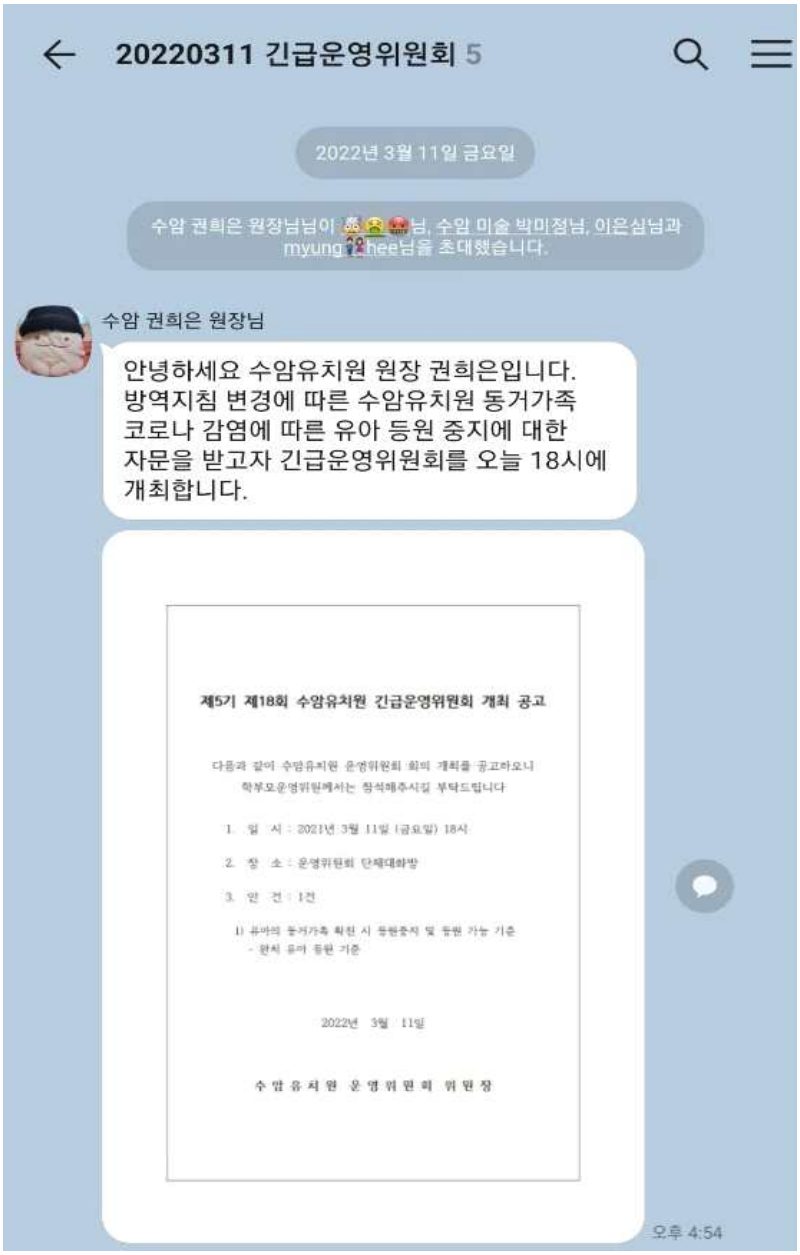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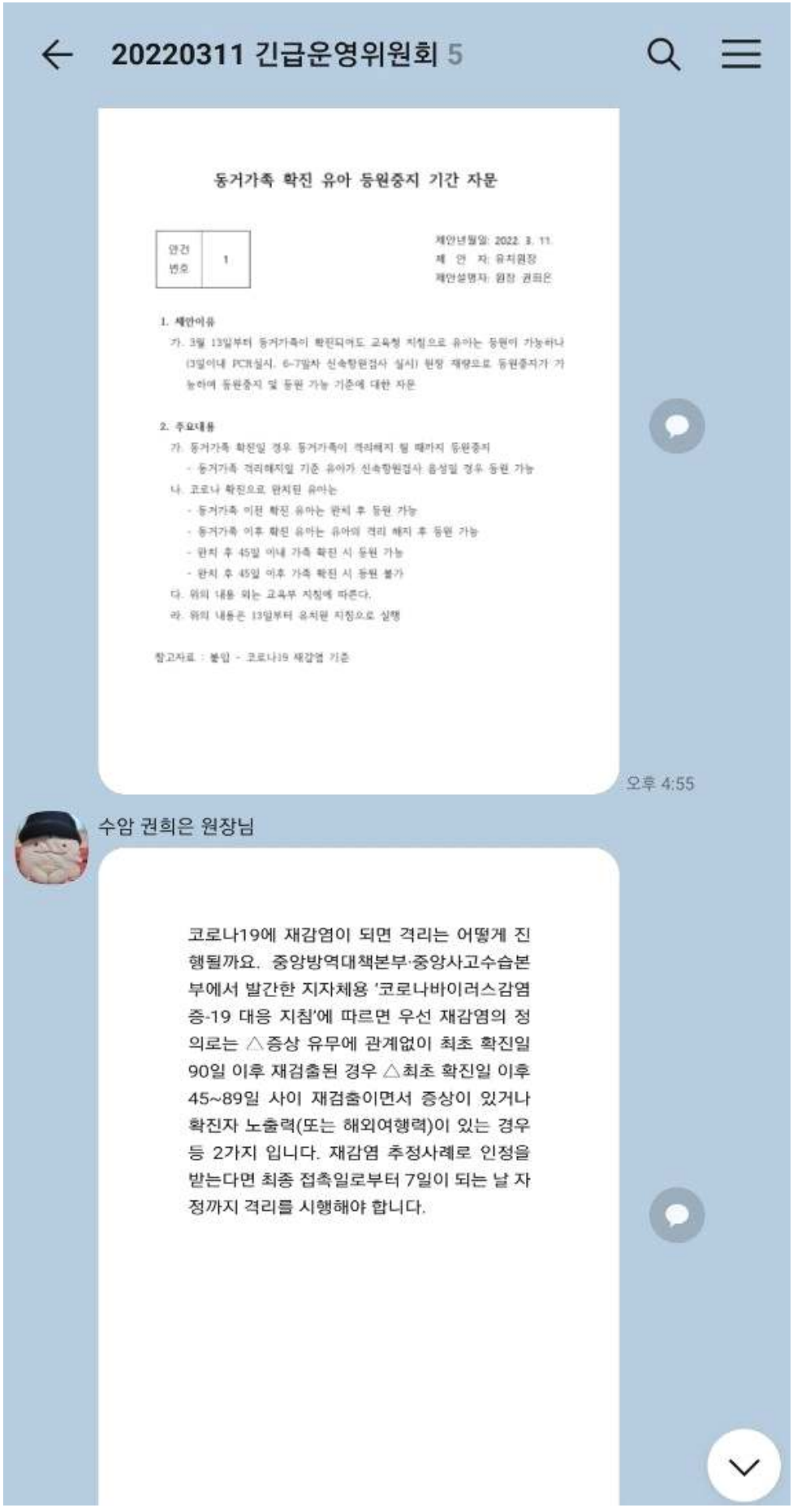

20220311 긴급운영위원회 5

동거가족 확진 유아 등원중지 기간 자문

안건 번호	1

제안년월일: 2022. 3. 11.
제 안 자: 유치원장
제안설명자: 원장 권희은

1. 제안이유

가. 3월 13일부터 동거가족이 확진되어도 교육청 지침으로 유아는 등원이 가능하나 (3일이내 PCR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원장 재량으로 등원중지가 가능하여 등원중지 및 등원 가능 기준에 대한 자문

2. 주요내용

가. 동거가족 확진일 경우 동거가족이 격리해지 될 때까지 등원중지
- 동거가족 격리해지일 기준 유아가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등원 가능

나. 코로나 확진으로 완치된 유아는
- 동거가족 이전 확진 유아는 완치 후 등원 가능
- 동거가족 이후 확진 유아는 유아의 격리 해지 후 등원 가능
- 완치 후 45일 이내 가족 확진 시 등원 가능
- 완치 후 45일 이후 가족 확진 시 등원 불가

다. 위의 내용 외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라. 위의 내용은 13일부터 유치원 지침으로 실행

참고자료 : 붙임 - 코로나19 재감염 기준

오후 4:55

수암 권희은 원장님

코로나19에 재감염이 되면 격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우선 재감염의 정의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 2가지 입니다. 재감염 추정사례로 인정을 받는다면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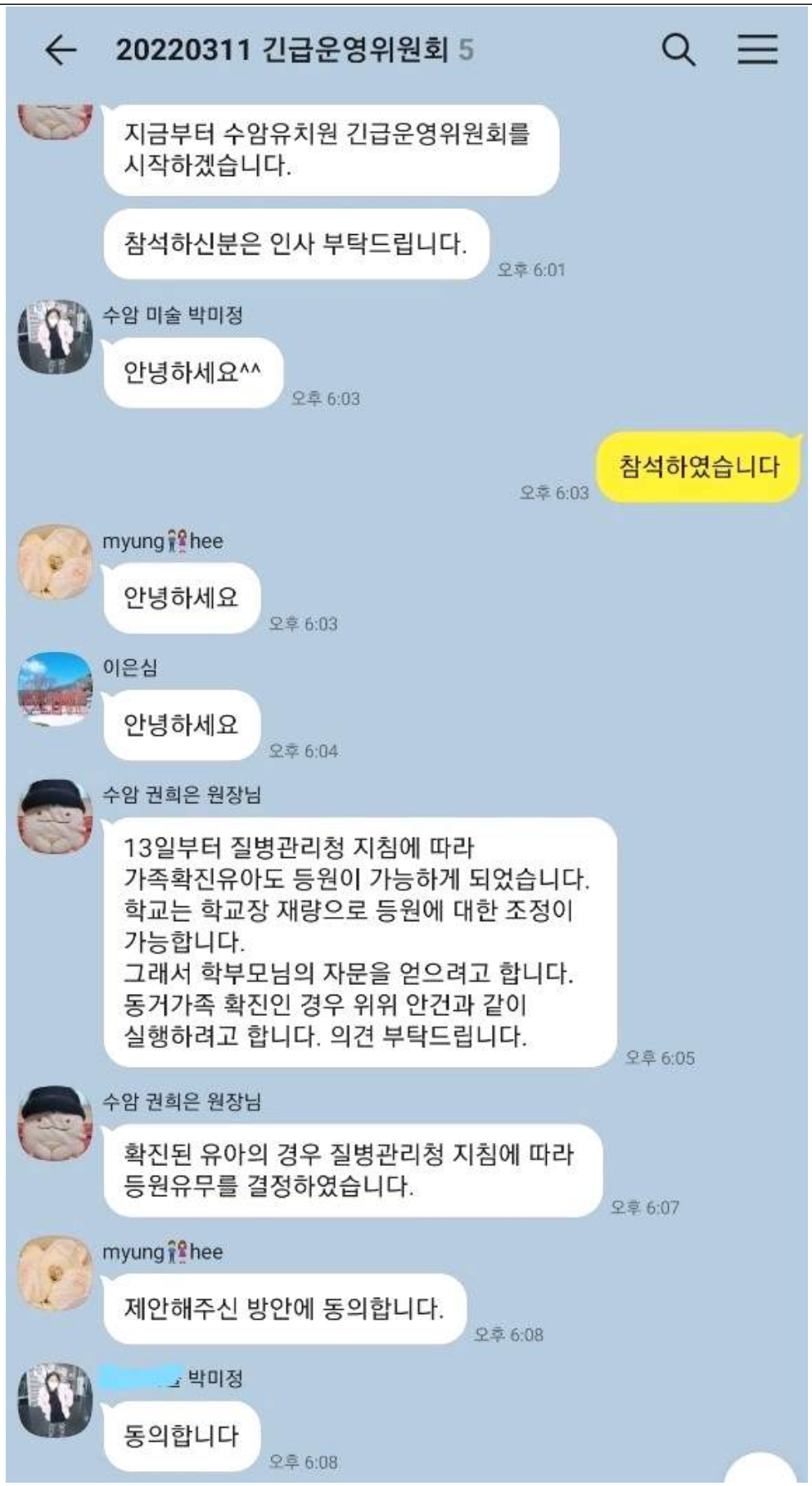
20220311 긴급운영위원회 5
지금부터 수암유치원 긴급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분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후 6:01
수암 미술 박미정
안녕하세요^^
오후 6:03
참석하였습니다
오후 6:03
myung hee
안녕하세요
오후 6:03
이은심
안녕하세요
오후 6:04
수암 권희은 원장님
13일부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가족확진유아도 등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자문을 얻으려고 합니다.
동거가족 확진인 경우 위위 안건과 같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후 6:05
수암 권희은 원장님
확진된 유아의 경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등원유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오후 6:07
myung hee
제안해주신 방안에 동의합니다.
오후 6:08
박미정
동의합니다
오후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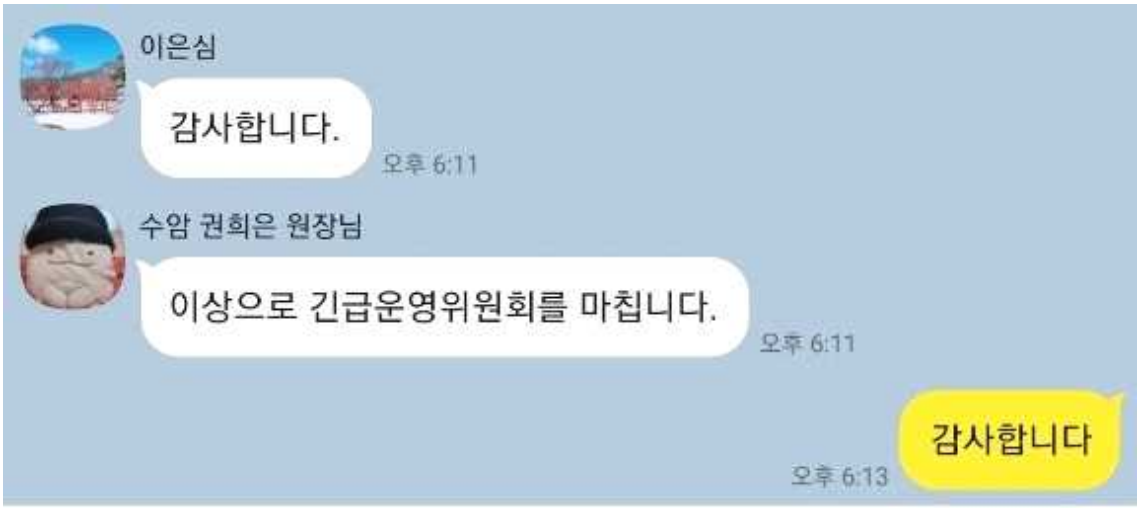

2022. 3. 11.

기록자 : 차민희 (인)